

〈어우러지는 관악을 위하여〉

성폭력 학칙 고쳐주기 077 7700



신교수 퇴진과 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 41대 총학생회, 관악여성모임연대
사회대 학생회, 자연대 학생회)

55

토론2

차례

1. 공대위 소개 (3)
2. 공청회를 기획하면서 (4)
3. 첫 번째 토론을 위한 글
피해자는 어떻게 느끼는가? (5)
4. 두 번째 토론을 위한 글들
우리는 왜 학칙제정을 하려 하는가 (8)
학칙가안에 있어서의 우리의 원칙 (9)
실명사과와 재교육의 필요성과
동조자의 처벌에 관한 얘기 (11)
학칙가안 (12)
5. 세 번째 토론을 위한 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공대위의 입장) (16)
6. 보론
성폭력학칙제정운동, 그 깃발을 올리자! (18)
성희롱(sexual harrasment)에 대하여 (33)

『신교수 퇴진과 성폭력 학칙제정 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가 구상된 것은 97년 10월쯤이었다. 그 이전부터 관악내부에 존재하던 여성운동 단위들이 학내 성폭력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더 이상 내버려둘 문제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에, 97년 전체 계획을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행동으로 잡았었다. 하지만, 대부분이 자치단위이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한계점들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관악여성모임연대는 학생 대표제가 책임있게 학칙제정을 같이 해나갈 수 있다면 더욱더 힘이 커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관악여성모임연대는 성폭력 학칙제정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상하였고, 97년 총학생선거에 출마한 6개의 선본에 '성폭력 학칙제정'을 공동정책으로 제안하였다. 그 이후 지금의 제 41대 총학생회와 관악여성모임연대, 사회대 학생회와 자연대 학생회가 함께 하는 지금의 공대위가 꾸려지게 되었다.

방학동안에는 공대위의 위상과 운영에 관한 고민과 성폭력 학칙과 학생회칙을 고민하였다. 그사이 2년 6개월을 대법원에 계류중이던 '신정효교수 성희롱 사건'의 3심 판결이 나왔고, 다행히 그 결과는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이었다. 이에 공대위는 성폭력 학칙제정뿐만 아니라 신교수 문제를 학내에서 마무리 짓는 일도 함께 해나가기로 하였다. 사실상 성폭력 학칙제정을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기도 했고,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학칙이 제정되어도 힘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공대위는 사실상 신교수 징계를 본부에 요구하고, 잊혀져가는 사건을 알려내는 일을 해왔다.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반성의 기미가 없는 교수님을 징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사회내에 존재하는 성폭력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도 이러한 우리의 방향에 맞물려 있다.

앞으로도 공대위는 성폭력 근절과 학교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를 열심히 해나갈 것이다.

공청회를 기획하면서.....

성폭력 학칙제정을 얘기하기 시작한지 벌써 4년이 지났다. '신정효교수 성희롱사건'이 있고 난 후 그러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성폭력 학칙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94년의 일이다. 그러나 신교수 사건이 사람들의 관심을 더 이상 끌지 못하게 되면서 더 이상의 논의가 되지 못하고 1년을 보냈다. 그런 후 각 대학에서 성폭력 사건들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공론화조차 되지 못했던 일들이 우조교의 용기 있는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는 비명은 지를 수 있을 정도로 나아졌다는 것은 확실치 않지만 공론화 되기 시작했다. 96년은 부산 교대 성폭력교수가 학생들의 주장으로 휴직이라는 징계를 받는 일이 있었다. 이 일을 전후로 해서 부산 동아대에서 성폭력 학칙을 제정하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97년 학칙을 제정하였다. 96년 동아대의 성폭력 학칙을 제정하겠다는 발표는 1년을 호지부지 보내야만 했던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96년 다시 본격적으로 학칙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했다. 우리의 원칙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단순규제가 아니라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다. 고민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내 18개 학교가 같이 모이게 되었고, 같이 2년을 고민해왔다.

고민하는 동안에도 관악에서는 학대 구양모 교수의 사건이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 어떤 형식이던 성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자리잡았다. 그 결과 관악에서는 97년 선거에서 6개 선본이 공동정책으로 성폭력 학칙제정을 주장한 바가 있다.

그 길다면 4년 짧다면 2년간의 고민의 결과를 관악의 학우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만들고자 이 공청회 자리를 준비하였다. 비록 소수가 고민을 해온 것이지만, 관악의 구성원들에게 검증을 받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소수가 고민했기 때문에 지나쳐버린 부분도 많을 수 있고, 더 나은 방안을 찾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다같이 모인 자리에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고, 우리들의 힘을 모아서 정당한, 아주 정당한 요구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첫 번째 토론을 위한 글

피해자는 어떻게 느끼는가?

근래 몇 번의 학내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며 떠오른 단상들을 적고자 한다. 이 글은 내가 남성 중심적인 현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관악에서 여성운동을 하는 한 여학우로서, 또 학내에서 남성들이 가한 수차례의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입장에서 쓰려한다.

왜곡된 성인식

현 우리사회는 지극히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이며, 사람들의 성인식 자체도 그러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성은 은밀하고 내밀한 어떤 것이며, 그것은 '섹스'라는 것으로 대표될 수 있다. 여성에게 있어 성은 목숨을 걸고 지키다가 한 남성에게 무슨 선물처럼 바쳐야 하는 것이고, 조신한 여성은 성욕을 가져서는 안되며, 느끼더라도 결코 드러내서는 안된다. 반면 애로 영화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섹스에 갈증이 난 섹녀로 그려진다. 그리고 남성들에게 있어 성은 돈을 주고 사거나, 포르노처럼 보고 즐길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욕구는 참을 수 없는 본능적이며,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것이다. 청조를 지키지 못한 여성은 싸구려 인생이며 화냥년이고, 경험이 많은 남성은 능력이 좋은 사람이다.

이러한 인식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남성 중심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자랐고, 그러한 성역할 규범을 체화하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은 현신적인 어머니로, 때로는 섹시한 아내로, 때로는 따뜻한 누이로, 또 때로는 어리광도 부릴 줄 아는 어린아이로, 때로는 조신하고 신부수업을 제대로 받은 처녀로, 만능 엔터테이너이기를 강요받아왔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성도 또한 섹시하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눈 깜짝하지 않는 슈퍼맨이어야 했다. 이러한 성역할 규범 속에서 얼마나 자신들이 억압당해 왔는가는 모든 이들이 느끼는 것일 터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남성 중심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폭력들이 남성적인 시각에서만 해석되고 판단된다는 것이며, 또 여성들이 공론화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은밀함과 익명성이라는 탈을 쓰고 이러한 성폭력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려 애쓰고, 여성도 똑같은 인간이고자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성폭력 사건이 거의 일상 생활이라 할만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되어 불거져 나오지 못하는 것은 신고율이 저조하기 때문인 것도 있다.

여성들은 성폭력을 경험할 때에 매우 당황하며,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것이 태반이다. 그러나 여성의 침묵은 남성들에게 암묵적인 동의로 여겨지며, 심지어는 여성의 저항은 내숭이나 양탈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남성들에게 있어 여성이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조차 가지지 못하며,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어딘가 부족한 사람이다.

여성들은 성폭력을 경험할 때에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인 가해자의 입장을 고려하기까지 하며, 그것을 경험한 후에도 모든 잘못을 자신의 태도나 행실로 돌린다. 그녀는 성폭력을 경험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는 동시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한 자신에 대해 자괴감과 자책감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명백히 잘못을 저지른 남성이 아니라면 성폭력은 엄연히 우리의 사회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오는 사회적인 범죄라는 점이다. 이것은 그녀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는 그녀를 질책하고 그녀를 공동체 속에서 몰아내며 상처받은 그녀의 영혼을 한번 더 무참히 짓밟아 버린다.

성폭력을 경험하고 난 뒤 여성들은 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이것이 하혈, 복통, 두통, 불면증 등과 같은 신체적인 고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성폭력은 다른 범죄와 달리 가해자의 피해를 고려하고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시되며 피해자의 인권은 온데간데없어지고 만다. 가해자는 이미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사람들은 보통 성폭력을 성희롱, 성추행, 준강간, 강간 등으로 신체접촉의 정도나 성기삽입의 여부로 그 경중을 구분하고, 그에 적절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고통은 사라지고 제 3자들이 이러쿵저러쿵 분류를 한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의 고통이다. 성기가 얼마나 삽입되었는가 하는 것은 단지 남성들의 주관에 만들어진 객관일 뿐이며, 여성을 배제시킨 객관이다. 한 여성에게 있어 성기를 삽입하는 것보다 전라로 만드는 것이나, 이 물질을 삽입하는 것이 더 큰 고통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더 무거운 죄가 될 수 있다. 항상 피해자의 입장에서 모든 성폭력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녀를 한번 더 죽였다.

성폭력 사건이 거의 일상생활이라 할만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되어 불거져 나오지 못하는 것은 신고율이 저조한 것 때문인 것도 있다.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이 이를 신고하여 공론화하고자 한다면 이는 진정 커다란 용기가 아닐 수 없다. 그녀는 자신이 그 사실을 밝혔을 때 받게 될 수많은 차가운 시선과 비난을 감안하고, 이 땅에 더 이상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에서 공론화하기를 원한 것이다.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볼 때는 물론 용감한 여성이다. 그러나 그 시선이 따뜻하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녀는 정조를 지키지 못한 여성이며,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는 여성이며, 시집가기는 그런 여성이다.

신교수 사건만 보더라도, 중대한 문제가 회화화되며 가십거리에 불과한 우스개 소리가 된다. 우조교가 신경휴 교수에게 앙심을 품어 복수의 칼날을 휘두른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돈다. 그런 미친 여성이 어디 있겠는가. 전국 방방곡곡에 자기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알려가며 5년간의 지리하고도 고통스러운 법정싸움을 일루 할 여성이 어디 있겠는가.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그 사실을 숨기려 하는 것은 공론화 이후에 받게 될 또 다른 피해가 두려워서이다. 자신이 그런 여성으로 낙인찍히는 것이 두려워서이다. 그리고 또한 법정까지 갈 경우 이길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모든 폭력이 권력을 등에 업고 이루어지듯이 성폭력도 그러한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쉽게 이루어진다. 남성은 이미 자신이 남성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강자이며,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돈이 많거나 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성폭력의 피해자는 항상 약자이기 마련이며, 그 범죄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강자의 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리라고는 볼 수 없다.

우리는 대학인이다. 언제나 기존 사회의 모순과 억압, 예측의 질서에 저항하고자 하며, 자유를 꿈꾸는 젊은이이다. 그야말로 특수한 대학이라는 공간 내에서 우리는 기존의 억압과 권력에 저항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젊은이들의 공간 속에서, 자유롭게 평등하다고 말하는 학내에서, 왜 수많은 성폭력들이 자행되고, 은폐되어지는가.

다시 이야기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수없이 많은 절망과 지침 속에서도, 계속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나아질 것도 하나 없어 보이는 길고 긴 싸움 속에서도 여성들이 끝까지 싸워야만 하는 것은 여성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반이기 때문이며, 인간이기에 인간답게 살 권리를 찾고자 함일 것이며, 또다른 세상의 반인 남성이 더 이상 적일 수만은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학내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과 일련의 자보 논쟁을 바라보며,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너무나 갑갑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라지고 학우들의 날카로운 감정 대립으로만 치달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관악에서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재하며,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있는가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번 공청회에 많은 학우들과 사람들이 참석하여 활발하고 책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계기로 학내 여러 기층에서도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두 번째 토론을 위한 글들(1)

왜 학칙제정을 하려 하는가?

왜 우리는 학칙제정을 주장하는가?

성폭력 학칙제정을 주장하면서 많은 학우들의 질문을 받게되었다. 그중 일부는 성폭력의 개념에 관한 것들이었고, 또 일부는 왜 시급한 사안을 두고 성폭력 학칙을 주장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그중 한가지 질문이 '왜 하필이면 학칙제정이나'는 질문이었다.

학교사회에서 학칙이 갖고 있는 이미지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학칙은 학생들에게 규제의 수단으로 비취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캠퍼스 이용지침등을 보았을 때도 학생들이 느끼는 학칙이란 형식적인 것이며, 학생이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4년 아니 몇 년을 학교를 다녀도 학칙에 쓰여진 글자하나도 알지못하고 졸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학칙'이라는 것을 성폭력을 없애는 수단으로 선택한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학생회칙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학교사회는 학생들만의 사회가 아니다. 교수님들과 교직원들도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의 일부이다. 우리가 학생회칙을 제정하고 해결하고자 한 것은 단지 우리들간의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사이에 존재하는 성폭력을 없애고자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생들 사이에서만 성폭력을 없애려는 노력을 해서는 전체 대학사회내에서의 성폭력 근절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학사회내의 자치적 규약으로써의 학칙을 주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학교사회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다른 여타의 성폭력과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학교 사회내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당한 것 뿐만 아니라, 교육받을 만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게 된다. 우리나라 사회의 특성상 단지 성범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도 소외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성폭력의 문제가 더욱더 심각한 것이다. 이는 학교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몇 년사이에 학생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는 결국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사람들은 모두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게 된다.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하며, 또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공동체에서 소외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는 누가 막아주어야 하는가? 학교는

언제나 공부할만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학교가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다. 교육받을만한 환경을 조성해야하는 책임은 학교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할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방편으로 학칙을 제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본부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써 학칙을 주장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가 원하는 학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한 학칙이다.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는 수준이 아니라 학생이 직접 학칙의 행사에도 참여하는 새로운 개념으로써의 학칙을 주장하는 것이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원칙을 학생사회가 함께 만들고, 중재위원회에 반드시 학생참여가 보장되는 학칙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학칙이라는 형식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나는 것이다. 자치규약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명백하다. 단지 미친 사람 한둘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은 정신이 이상한 개인 한둘이 저지르는 일이 아니라, 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사회적 묵인 속에 저질러지는 일이다. 우리는 학칙이나 학생회칙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묵인을 깨뜨리려고 한다. 규제란 두 가지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하나는 가해자의 재범방지와 또 다른 하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것이 범죄가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우리는 학칙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같은 인간으로써 진정으로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 불완전한 방법일지는 모르지만 성폭력 학칙제정을 주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 토론을 위한 글들(2)

학칙가안에 있어서의 우리의 원칙

성폭력, 사회적 성억압구조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형태의 폭력이며 동시에 그 구조를 강화, 지지하는 구실을 하는 기제로서의 성폭력의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으로서 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의 사회성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성폭력이란 이 사회 전반이 기반하고 있는 심층적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어떠한 제도적 해결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성폭력 학칙을 이야기 할 때도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제도적 '문제제기'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성폭력 학칙은 개별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해결책'의 구실을 해야 하면서 또한 그것이 적용되는 하나의 공동체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문제제기'의 구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조사와 처벌의 틀거리를 이상의 원칙이 필요하다.

성폭력 학칙의 내용은 성폭력의 사회성을 견지해야 한다

성폭력의 개념 및 신고 절차, 처벌 및 재교육의 절차, 진행 과정의 투명성 원칙 등에서 성폭력의 사회성의 입장이 견지되어야 한다. 단순히 개별 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하기만 하는 식의 성폭력 학칙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에 불과하다. 성억압구조와 관련하여 외적으로는 대사회적 파급력을 가지고 내적으로는 구성원들의 의식적, 문화적 기반의 변화를 위하여, 또한 그를 통해 이제까지와는 다른 진보적 물질 기반을 구성원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성폭력의 개념에 있어 기존 법과 사회관념을 뛰어넘는 피해자 중심의, 문화적, 환경적 폭력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신체 접촉의 정도로 피해 관계를 심사하는 가부장적 성폭력 개념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권리가 얼마나, 어떻게 침해당하였는가를 새로운 기준으로 세우는 일이다.

신고 절차에 있어 기존의 '친교죄'의 관념에서 벗어나야 함은 더 자세히 역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처벌 과정에 있어, 그것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한 것은 죄를 범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벌을 준다는 식의 보복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다. 처벌의 의미는 가해자의 공동체에 대한 사과이며 변화의 의지이고 공동체 전체의 변화에 대한 촉구여야 한다. 가해자는 사회적 폭력의 구체적 체현자라는 특수한 위치에 놓인다. 즉, 성폭력은 사회 구조가 가능하게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자 또한 그 사회 안에 위치한 사람으로서 그 구조에 매인 사람이라는 점으로 인해 개인적 비난의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을 사회가 조장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체현한 것은, 여전히 그 자신의 책임의 몫이다. 그러므로 가해자 징계 과정은 가해자가 스스로의 행위에 책임을 지고 부담을 감수하면서 스스로와 대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징계 내용 자체의 구성 역시, 가해자 처벌의 관점에서만은 안된다. 그것은 피해 가능성을 의식하는 모든 성원이 학칙 적용 범위내에서 실질적 활동과 생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물질 기반이 된다는 것과, 가해자의 변화를 끌어내어 공동체와의 화해를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성폭력 학칙은 모든 공동체 성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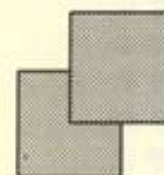
우리는 성폭력 학칙이 하나의 제도, 즉, 또 하나의 억압적, 독단적 권위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성억압구조의 극복을 위한 실험으로서의 학칙 운영은 그러므로 공동체 모든 구성원에게 열린 것이어야 함이 당연하다. 학내 3주체, 즉 교수, 학생, 교직원 모두의 동등한 참여와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칙은 진정한 민주와 평등

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목적과 하등의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정과 운영에 있어 학내 3주체의 동등한 참여를 원칙으로 견지한다.

성폭력 학칙은 유연한 것이어야 한다

학칙의 조항은 그 운영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유연성이란 사건의 은폐와 봐주기를 위한 유연성이 아니라, 바로 화석화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성폭력 학칙의 목적에 맞게 실행하기 위한 유연성을 말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폭력 학칙이 물신화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학내 성억압구조의 극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실험의 장으로서 유연하고 역동적인 성폭력 학칙의 제정을 기대한다.

이상의 짧은 글을 통해 성폭력 학칙 제정 원칙에 관한 단상들을 열거해 보았다. 성폭력 학칙의 제정과 그 민주적 운영을 바라며, 글을 닫는다.



두 번째 토론을 위한 공동(3)

왜 실명사과이어야 하는가 ?

학내 여성단체들은 성폭력 사건해결의 출발은 가해자의 공개 실명사과에 있음을 기본원칙으로 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성폭력 학생회칙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너무나도 당연시하며 언급되지 않았던 이 이야기들이 요즘 들어 많이 논의되고 있다. 왜 공개 실명사과이어야 하는가?

먼저, 왜 '공개' 실명사과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자. 최근의 인문대 사건의 예를 들지 않아도 공개 실명사과에 대한 반대입장에는 여러 다른 논거들이 존재하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이렇게 다양한 논의들의 가운데를 꿰고 있는 논리는 '이런 파장을 일으키면서까지 공개 실명사과를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여기에 과감하게 우리의 입장을 단언하자면 '그럴 필요가 있다'이다. 공개 실명사과는 주로 같은 공동체내에서 일어난 성폭력사건의 해결책으로 논의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의 반대입장들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공동체내의 성폭력사건이기에 공개 실명사과는 더욱더 필요하다. 성폭력 사건 논의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적 범죄로서의 성폭력'은, 공동체내에서 일어난 성폭력의 경우, 바로 그 공동체에서 잘못 형성된 성의식이 일차적 원인이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은 그 공동체 전체가 져야하며, 그 방법으로 공론화라는 것이 뒤따르게 된다. 공개

실명사과는 이러한 공론화의 방법이며 그 방법이 '실명'이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의미한다. '실명'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는 사과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질 수 없으며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공개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식의 통보 이상은 되기 힘들 것이다.

'이런 과정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우리 공동체가 잘 굴러가기 위해'라는 논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오히려 공개 실명사과의 이유가 된다. 공동체라는 것이 다수, 혹은 그 공동체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이상 (넓은 의미의)소수의 의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대전제를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또 모든 구성원의 의사가 존중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성폭력 사건에서도 다수를 위해 소수가 침묵하기를 강제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왜 공개 '실명'사과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앞에서의 공동체 속에서의 공개 실명사과의 의미를 들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공개 실명사과의 필요성은 명확하다. 자신의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 사과 속에는 가해자의 책임감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실제로 성폭력 사건에서의 대부분의 공개 실명사과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은 공개 실명사과의 필요성을 잘 나타내준다.

두 번째 토론을 위한 글들(4)

학칙가안

먼저 이 것은 '가안'임을 명확히합니다. 이 가안을 가지고 확실한 학칙인 것처럼 오용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칙

제 1조 (목적)

대학은 대학구성원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근절하고, 개인의 직무나 학업 수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거나 불법적으로 위협적, 적대적 또는 공격적인 작업, 학습,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 성적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러한 속에서 교수진과 직원, 학생을 포함한 전 대학사회 구성인이 자유롭고 인격적인 교육과 근로분위에서 작업 및 수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구성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규정, 규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절차 및 그 담당인과 기관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성을 매개로 대학구성원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및 기타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신체적)인 행위가 가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가 개인의 업무 능력을 저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근무(생활, 교육) 환경을 형성할 의도를 띠었거나, 그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환경형 성폭력의 조항에 의거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규정한다.

당해 조항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대학 구성원들이 타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어떤 행위가 '객관적으로' 적대적인지 악의가 있었는지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상황과 상대가 느낄 감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의 근거

- 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행위이거나 발언일 때
- ② 성적이거나 본질적으로 성에 기초한 행위이거나 발언일 때
- ③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에 대한 복종 또는 거부로 개인의 학업평가, 고용, 인사 또는 다른 학교 일에 대한 참여의 조건에 영향을 끼칠 때
- ④ 환경형 성폭력일 때
 -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이 개인의 능력을 비합리적으로 저해하는 또는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학업, 근무, 생활 분위기를 조성할 때
 - 차별적 행동의 빈도와 정도, 공격적인 언동이라든가 혹은 고용인의 작업에 불합리한 접근으로 적대적인 환경을 구성하여 타인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 ⑤ 행위 또는 발언이 지속 반복될 때

제 3조(대상)

본교 구성원으로서 교수는 외부 전임강사 이상을, 학생은 본교 재학생을, 교직원 은 기성회직 이상을 포함하며, 위임교수 및 교환학생도 대상에 적용된다. 피해자, 가해자 중 일방이라도 이에 포함될 경우에도 본 학칙은 적용된다.

제 4조 (피해자 보호)

- ①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용모 및 소속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② 성폭력 사건의 징계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 추궁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 ③ 사건 징계과정은 물론 가해자 처벌 이후에도 징계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의

연대 책임을 지야 한다.

제 5조 (신고인)

- ① 사건에 대한 신고는 피해 당사자나 본인 이외에도 피해자가 선정한 대리인 또는 피해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제 9조에 근거하여 할 수 있다.
- ② 신고인 보호는 제 4조의 피해자 보호에 근거한다.

제 6조 (성폭력 상담실 설치)

- ① 학교는 성폭력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실장은 상담 전문가, 또는 성폭력 관련단체의 추천이 있는 교직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한다.
- ② 재정문제에 있어서 학교측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 ③ 상담원 교체나 채용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 7조 (상담실의 위상 및 업무)

1항 (위상)

성폭력 상담실은 학교내의 어느 기구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위상을 가진다.

2항 (업무)

- ① 성폭력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②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병원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 ③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는 일
- ④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홍보를 하는 일
- ⑤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제 8조 (징계위원회)

1항 (징계위원회 구성)

- ① 징계위원회는 사건접수일로부터 *일 이내에 구성한다.
- ② 징계위원회는 교수, 학생, 교직원, 성폭력 상담소의 대표자로 구성하며 각 대표와 인원과 성별은 동수의 비율로 구성한다.
- ③ 임기는 *년 으로 한다.

2항 (징계위원회의 역할)

- ①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및 사후처리
- ② 피해자 보상과 치료는 제 11조 ①-㉔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 ③ 가해자 징계회부 및 재교육
- ④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고

3항 (징계위원회 운영)

- ① 본회의 진행은 과반수 참석으로 시작하여 회의 진행은 학생측 참가인중 1인으로 한다. 단, 불참시에는 불참사유를 징계위원회 소집전까지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정족수 미달로 결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다시 소집한다.
- ② 본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며 소수의 의견을 존중함을 원칙으로 한다.

4항 (징계위원회 위상)

징계위원회는 학내 구성원의 동등한 참여로 구성되며 학교본부와 독립적인 위치임을 원칙으로 한다.

제 9조 (신고와 신고기구)

제 5조에서 명시된 신고인은 서면, 전화, 통신, 직접방문등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상담실에 신고한다. 기타 학생생활연구소 여학생부, 지도교수, 학과(부)장, 대학장, 대학총장, 교직원 대표기구, 학생대표기구, 학내 여성관련 단체, 성폭력관련 외부단체 등에 들어온 사건도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경우 최종적으로 상담실에 신고되어야 한다.

제 10조 (적용시한)

적용시한은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본 학칙의 대상에 포함될 시에는 사한제한없이 적용된다.

제 11조 (징계내용)

일차적으로 징계수위는 징계위원회의 논의와 결정에 따른다.

- ① 가해자에 대한 징계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 ㉠ 성폭력이나 성관련 프로그램을 듣는 재교육
- ㉡ 성폭력 상담소 등의 외부단체에서 일정기간 봉사
- ㉢ 자신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명시하여 자보, 언론등을 통해 공개사과
- ㉣ 금전적 피해보상
- ㉤ -1) 학생: 퇴학, 무기정학, 유기정학, 근신등
-2) 교수, 교직원: 해임, 직위해제, 정직, 전직, 감봉등
-3) 외부인: 징계위원회는 가해자가 속한 구성단체와의 접촉을 통해 징계를 요구한다.
- ㉥ 경고장 발송

- 경고장은, 공개하며 경고장 발송이후에도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징계 수위를 높인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다.

환경형 성폭력, 농담을 가장한 여성에 대한 평가절하, 남성의 성적인 대상으로 여성을 사고하는 것이 잠재되어 있는 발언이나 행위, 옷차림 신체 성적활동에 대한 지나친 언급, 여성배제적인 불쾌한 성적 농담,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성별 정체성에 의한 여성의 가치에 대한 폄하적인 발언, 성기중심적인 언행이나 행위, 음란물을 공공장소에 부착하는 등의 행위와 같은 것들

④ 기타

② 다음의 경우에는 가장 처벌한다.

㉠ 보복, 부인, 불이행시

㉡ 재범일 경우

제 12조 (동조하는 자에 대한 징계)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이 명백하였을 때는 그 동조자에 대하여 제 11조에 근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

세 번째 토론을 위한 글들(14)

공대위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신교수퇴진과 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그 이름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나타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중 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히고자 한다.

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해 우리가 주력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하나는 '왜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과 다른 하나는 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해 우리가 취할 태도에 관한 것이다.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이 필요하다는 우리의 입장은 '성폭력은 사회의 지배논리에 저항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좀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성폭력은 '일반적 범죄'와 다른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그 처벌 역시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개 '범죄'라고 이야기되는 행위들은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성폭력이 '범죄'로 인정받을 경우 이 역시도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은 '범죄'로서 인정받기도 힘들뿐더러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처벌받기는 더 힘든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특히나 학생사회와 같이 공동

체 의식이 강조되는 상황이나 교수, 학생사이나 교수, 교직원사이 혹은 교직원, 학생사이와 같이 그 위계질서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현실은 더욱더 극명해진다. 이러한 현실적 조건(?)들은 성폭력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상대방에게 성'폭력'으로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자신이 받은 성폭력을 '내가 유별나서'라고 치부하게끔 만들 수도 있다. 성폭력이 '사회적 범죄'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의 지배논리속에서 '모르고서'하는 행동들은 처벌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여기에서 우리들은 소리 높여 외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성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성폭력 범죄 가해자들은 이러한 사회모순에 저항하지 못한 죄를 지른 것이고 진정보다 올바른, 그리고 그 구성원 모두가 억압받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모순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에서 자체적인 해결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이는 단지 처벌위주의 법이 아닌 성폭력 학칙제정을 풀어나가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필요하다.

그렇다면 과정으로서의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의 모습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의 활동은 어떠한 모습을 띄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을 '대학자치'라는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성폭력 학칙의 적용대상은 대학의 구성원이다. 그 구성원은 전통적으로 교수, 학생, 교직원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현재 대학운영의 의결권은 총장과 원장회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학생과 교직원은 단지 '적용'의 대상일 뿐인 것인가? 만드는 사람 따로, 적용되는 사람 따로인 원칙은 단지 처벌을 위한 것일 뿐, 사회의 지배논리를 바꾸어 나갈 힘은 없다. 이것은 본래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학의 구성원으로써 우리의 학칙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려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성폭력 학칙가안에 대한 논의 테이블 구성이 필요하다. 이 논의 테이블은 대학의 각 주체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번 공청회가 준비되었으며, 학칙안이 결정될 때까지 이러한 자리는 상시적으로 존재해야 할 것이다. 학칙안 검토후의 의결과정 역시 대학의 각 주체들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학본부의 입장은 '캠퍼스 이용지침안'에서와 비슷하다. 그들은 의결권에 있어서의 독점권을 내놓지 않으려 한다. 이는 대학에서의 교수 이외 구성원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며, '대학자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다. 그러나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비타협적으로 이를 쟁취할 것이다.

성폭력 학칙제정운동 그 깃발을 올리자!

0. INTRO

현재 각 대학에는 수많은 여성운동조직이 건설되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8개 대학 여성운동조직이 결합되어 있는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가 주관한 한 설문조사에서 성폭력학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답변한 사람들을 여성과 남성 각각 96%를 웃돌았다¹⁾. 서울대의 지난해 41대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여섯 개 선본 모두가 당락에 관계없이 「관악여성모임연대」와 함께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의 일주체로 설 것임을 공동공약으로 내세운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폭력학칙이 제정된 단위는 아직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으며,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의 주체와 흐름이 보이는 곳도 많지 않다. 오히려 대학문화의 전반적인 쇠락과 학생운동의 총체적인 침묵으로 인해서,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적 문화는 대학사회를 더욱 노골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은 이러하다. 성폭력 근절은 하나의 당위이며, 그 당위에는 누구나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운동으로 드러날 때 그것은 두 개의 거대한 벽에 부딪힌다. 하나는 성폭력을 우연한 개인의 문제로, 보수적인 윤리의 문제로, 여성의 '정조'의 문제로, 사소한 문제로 인식하는 관점과 행위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폭력 근절의 목표와 의의에는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혹은 주저하는, 혹은 무기력한 대중들 그리고 운동 그 자체이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앞서 말한 성폭력학칙제정 96% 찬성과 선거 공동공약이 너무도 쉽게 얻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이 지금까지 이름만으로 존재했어야만 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바로 이 두 가지의 벽은 항상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운동을 짓누르는 완강한 권력관계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철저하고 뿌리깊은 성폭력으로 현상한다.

성폭력의 근절이라는 당위를 위한 운동이 또다른 성폭력으로 저지당하는 모순된 현실. 이 글은 정확히 이러한 현실 위에 서 있다. 이 글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글은 학생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을 즉각 시

1) 1997, 여성연대회의, 「대학 = 성폭력 박물관」 14p

작할 것을 주장하고 촉구하고자 한다. 이 글은 명백히 여러 여성운동조직의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에 서 있다. 둘째, 이 글은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그동안의 학내 여성운동에 대한 나름의 평가와 반성 그리고 여성운동이 내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여성운동의 급진적 전환에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이 글은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의 가능성과 운동 과정 중의 유의점에 대해 논함으로써 그것의 올바른 방향을 선회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1. 성폭력에 관한 담론은 여성의 언어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반성폭력 운동은 성폭력의 개념을 확장하고, 성폭력에 관한 성폭력적 담론을 해체하고 이를 여성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성폭력 사건은 언제나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앞서, 그 사건이 성폭력이나 아니냐라는 '성폭력'의 개념과 지칭을 둘러싼 논쟁이 먼저 이루어진다. 성폭력은 보편적으로 가장 극악한 폭력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이 때의 성폭력의 범위는 너무도 협소하기 때문이다. 현 사회의 성폭력에 관한 담론은 그 자체가 지극히 성폭력적이며 여성배제적이다. 따라서 성폭력의 근절이라는 목표는 이미 사회적으로도 성폭력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한 처벌에서 그칠 수 없는 것이다. 성폭력 개념의 범위를 넓혀 나가며,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종류의 성폭력에 반대하는 운동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1. 성폭력은 전 사회와 모든 개인에 내재한 구조적인 폭력이다

성폭력은 우연한 한 순간의 문제가 아니다. 성폭력은 그 구체적인 순간은 물론이고 그 이전과 그 이후에도 여성에게 끊임없는 공포와 고통과 허무와 절망과 좌절을 강요한다. 또한 성폭력은 어떤 일부의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폭력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몸, 자신의 성적자율권을 갖지 못한 모든 여성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모든 여성들은 그들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전 생애 모든 순간에 걸쳐 잠재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성폭력의 피해자이다²⁾. 여기에는 어떠한 은유도 없다.

성폭력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은 가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성폭력은 어떤 특정한 선천적인 악인에 의해 자행되는 우연적인 행위가 아니다. 성폭력은 성적분할, 성적배제를 바탕으로 성억압과 성폭력을 구조화시키고 있는 현 사회가 전면적으로 재구조화되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 의해서도 누구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반적으로 이는 특정인들만의 우연한 문제로 고립된다. 성폭력은 여전히 가장 공론화되지 않는 문제들 중 하나이다. 그리고 어

2) 성폭력의 대상은 '성적 피해를 겪은 여성'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은 잘못이다. 실제로 성폭력은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행해진다. 즉 성폭력의 원인이 피해자가 '아한 옷을 입고 있어서', '정숙하게 행동하지 않아서', '조심하지 않아서'라는 말은 가당치 않다.

쉽게 공론화가 되었을지라도 이는 항상 피해자와 가해자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피해자는 '정숙하지 못한 여성'으로, '몸을 버린 여성'으로 고립되는 가장 두려운 형태의 성폭력을 경험한다. 가해자 역시 정당한 평가 이전에 고립된 범죄자로 낙인찍힌다. 성폭력 사건과 그 피해자 및 가해자를 고립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성폭력 자체는 온존시키는 대신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철저히 배제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³⁾.

12. 성폭력의 피해자는 모든 인간이며, 여성운동의 주체도 모든 인간이어야 한다

현 사회의 성폭력적 구조는 여성과 남성, 그리고 모든 성적소수자들을 막론하고 전 구성원에게 차별적 박탈을 수행한다. 이러한 박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결단코 없다. 첫째, 성폭력의 대상에서 모든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⁴⁾. 둘째, 성폭력 가해자 역시 성폭력의 피해자이다⁵⁾. 성폭력을 행했다는 사실은 가해자 인격의 파탄을 증명한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단죄가 항상 성폭력 그 자체가 아닌 성폭력범죄자 개인에 대한 처벌로 현상하는 현실에서, 가해자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셋째,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잠재적인 성폭력의 가해자로서의 모든 남성은 오히려 가련한 존재이다. 남성은 따뜻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를 교육받지 못했다. 경쟁을 위해서, '남자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남성은 그것을 거부하도록 강요당했다. 남성은 여성을 소통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속물화된 성적 대상으로서만⁶⁾ 대하도록 교육받았고 그럼으로써 자신 역시 속물화

3)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특히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인 경우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은폐된다.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배제, 더 리얼하게는 매장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러한 은폐를 정당화한다. 같은 맥락에서 여성운동이 주장하는 실행 공개사과에 대한 반대 입장 또한 강력하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첫째, 성폭력이 은폐되었을 경우, 그리고 심지어는 정당하게 평가되고 가해자가 처벌되었을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폭은 피해자이다. 둘째, 여성운동이 주장하는 사건의 공론화와 가해자의 공개사과는 성폭력 근절의 첫걸음이며 이는 특징적인 매개체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셋째, 가해자의 실행 공개사과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를 매장시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바로 위와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한 입장은 은연중에 이미 가해자의 변화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며 그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가해자를 일반인과는 무관한 성폭력범죄자로 낙인찍는 결과를 가져온다. 가해자가 자신의 실명을 걸고 몇몇하게 사과를 할 때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자신과는 다른 성폭력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물론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대중에 대한 공격 역시 여성운동의 몫이다.

4)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 사례 분석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중 남성의 비율이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피해자는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해자는 주로 직장 상사나, 학교 상급생, 군대 상관 등 남성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사실이 회화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실적 권력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남성이 우위에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남성에 대한 성폭력'은 사실 혐음모순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동성애와 폭력성을 연결시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중요한 것은 성폭력이 대상의 특성과는 무관한, 고립된 권력관계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치명적이다.

5) 범죄 행위와 관련된 정당한 처벌로 인한 피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 그것은 '피해'라고 말해줄 수 없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가해자의 피해'를 '피해자의 피해'보다 우선하여 강조하는 것은 성폭력 문제의 본질을 흐리며 그 해결을 거부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6)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과는 반대쪽 편향으로 여성을 신비화시키는 경향도 많다. 그러나 이 두 시각은 사실 다르지 않으며 항상 공존하기 마련이다. 이 두 시각 모두 여성을 소통할 수 있는 주체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확히

되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한 줄도 되지 않는 권력을 여성에게 폭력적으로 행사하면서 그것에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겐 더 많은 권력을 위한 경쟁만이 남는다⁷⁾.

성폭력의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모든 인간이다. 따라서 반성폭력 운동은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칠 수 없다⁸⁾. 그것은 성적분할, 성적배제를 바탕으로 성억압과 성폭력, 인간관계의 기형화를 구조화시키고 있는 현 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이며 대안적 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이러한 운동의 주체는 너무도 당연하게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그래야만 한다.

13. 가해자의 관점이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성폭력은 명백한 하나의 폭력이다. 그러나 동시에 성폭력은 매우 특수하고 철저한 폭력이다. 어떠한 폭력도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이 전가되지는 않는다. 어떠한 폭력도 그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또다른 폭력이 가해지지는 않는다. 어떠한 폭력도 다른 여타의 이유로 인해 폭력 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어떠한 폭력도 '가해자의 피해'가 '피해자의 피해'보다 강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폭력의 경우에는 다르다. 성폭력의 원인은 항상 여성의 무책임성으로 되돌려 진다. 그리고 피해자는 '정조를 잃은 여성'으로 낙인찍힌 채 내부의 자책과 외부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일생을 살아가야 한다. 성폭력의 피해자는 침묵해야만 한다. 성폭력을 폭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 그것이 폭력이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항상 그녀의 몫이며, 그 자체가 참을 수 없는 성폭력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은 그 앞에 항상 수많은 수식을 달고 다니며 그것은 성폭력 그 자체보다 항상 우위에 선다. 즉 '어쩔 수 없는 성욕 때문에', '사랑하니까', '유혹에 못 이겨', '그녀도 원했다고 생각해서', '분위기 때문에', '몰라서' 등등의 수식어는 항상 성폭력을 은폐하고 정당화한다⁹⁾. 성폭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해결은 항상 '가해자도 피해자다', '그것은 가해자에 대한 폭력이다'라는 완강한 반발에 부딪혀 좌초하고야 만다. 실제로 대부분의 성폭력의 해결 과정은 피해자에게 더 많은 피해가 돌아간다.

동일하며 각각의 여성에게 동일한 억압과 배제를 수행한다.

7) 실제로 가정에서 권력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남성은 사회적 권력과 자본을 소유한 자에 한정된다. 일반화해서 말하기엔 위험한 측면도 있지만, 자본주의 하에서 공간은 이미 상품화된 성을 정당하게⁷⁾ 구매할 수 없는, 경쟁에서 낙오된 패소한 남성들의 비참한 현실의 한 단면이다. 또한 사회적 권력을 상실한 노년기에 남성은 여성에 비해 훨씬 고독하다. 그들이 배운 인간관계는 권력의 일방적 행사가 전부였기 때문에, 권력의 상실은 직접적으로 모든 인간관계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8) 물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피해자 여성의 인권 보호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9) 여기서 나열한 여러 수식어들은 지극히 일반적인 것들이며 각각이 뿌리깊은 이데올로기와 현실을 함축하고 있다. 즉, 생물학주의와 남성이 성욕이 강하다는 속설, 테이트 공간, 성폭력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다는 편견, 여성의 'no'는 'yes'라는 오해, 부정적 의미에서의 공동체주의, 성에 대한 지독한 무지함, 등등.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간에, 상황이 어떠했는지 간에,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간에 성폭력 그 자체에 대한 명확하고 정당한 평가,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성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 자체이며, 그것의 일차적인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¹⁰⁾. 이것이 원칙이다. 물론, 가해자의 피해를 인정할 수는 있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가해자에게 돌아가는 부당한 피해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에게 자동적으로 면죄부가 부여될 수는 없으며, 그것으로 인해 성폭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

14. 정조 보호의 문제가 아닌 성적자율권 확보의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강간은 남성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여성의 정조를 파괴하는 범죄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정조 관념이 회박하다고 판단되는 여성의 경우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라는 말이 정당화된다. 또한 같은 이유로 성폭력의 피해자 역시 피해여성 자신에 앞서 부모, 남편, 그리고 그 여성의 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숙히 뿌리박혀 있다¹¹⁾.

정조의 개념은 여성의 몸을 여성의 것이 아닌 여성이 귀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소유물로서 인식에 기반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폭력을 범죄로 간주하는 것은 그것이 여성 자신의 몸에 대한 자율권을 침해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재생산적 신체를 소유한 공동체의 소유권을 침해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정조의 보호란 관점에서 성폭력을 반대하는 것은 여성지배를 더욱 더 공고히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관점은 성폭력의 피해자인 여성을 정조를 상실한 여성¹²⁾으로 낙인찍으며, 영원히 성폭력의 피해에서 헤어날 수 없게 만들뿐

10) 성폭력의 가해자는 보통 사람과 구별되는 특수한 사람이 아니다. 가해자는 '범죄자'라는 고립되고 통일된 인격체가 아니다. 성폭력의 개념을 올바르게 확장한다면 사실상 현 사회구조에 편입된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성폭력의 가해자이다. 가해자는 사회가 구조화하고 있는 성폭력적 행위, 사회적 성폭력의 담지자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극단적인 경우, 명령에 의한 성폭력을 수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차적인 책임은 그에게 있다. 가해자는 원천부터 '범죄자'라서가 아니라, 이 극악한 사회가 수행하는 구조적 성폭력을 자신의 목적을 통해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이 사회의 모순에 저항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그는 현 사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항없이 따랐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그가 갖고 있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박탈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만 가해자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사회적 성폭력 자체에 대한 투쟁, 모든 사람에게 내재한 성폭력에 대한 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

11) 이러한 정조 개념의 현재적 양태는 이러하다. 대부분의 경우 성폭력 사건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피해자와 관련이 있는 공동체 내부의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공동체 외부의 사람들에게 의한 공동체 내부 사람에 대한 성폭력에는 폭발적으로 분노를 터뜨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내부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공동체를 위해서', '가해자의 체면을 위해서' 등을 무마시킨다. 이것이 피해자는 물론이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가해자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임은 명백하다. 이 때의 공동체는 가족과 친족은 물론이고, 학생회사의 공동체도 포함된다.

12) 여성의 몸을 공동체의 재생산적 신체로 이해한다면, 정조를 상실한 여성은 더 이상 소유할 가치, 여성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 된다. 이러한 관점은 대중들에게 뿌리깊게 속화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성폭력의 가해자는 쉽게 용서되고

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조의 보호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자신의 신체와 성적자율권을 가진 당당한 존재라는 측면에서, 성폭력에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¹³⁾.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몸에 대한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의 성적자율권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박탈·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성폭력이다. 성폭력에 대한 보수적 윤리는 그것이 형식적으로는 성폭력에 반대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의 전복해야 할 성폭력에 다름 아니다.

15. 모든 종류의 성폭력에 대한 차별없는 반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객관적'으로 성폭력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 것인지, 성기가 삽입되었는지 아닌지, 어느 정도 삽입되었는지에 따라서 구분된다. 그러나 이 때의 객관은 객관을 위장한 남성의 주관에 불과하다. 여기에 여성의 주관과 여성적 사고는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남성중심적, 성기중심적인 성인식이 지배적인 현실에서 여성의 성은 단지 남성의 욕구를 채워 주는 육체적인 대상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다. 바로 이러한 현실이 수많은 성폭력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앞서의 '객관적' 판단은 이러한 현실의 무비판적 반영에 불과하다.

성폭력은 성폭력이다. 강간, 준강간, 성추행, 성희롱, 성적 괴롭힘 등등의 성폭력의 정도를 구분하는 용어는 성기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문제의 본질을 흐릴 뿐이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자율권을 침해한 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성폭력에 의한 피해는 피해자의 주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것이 양적으로 구분될 수는 없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성폭력에 대한 차별없는 반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에게 반성폭력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원칙과 운동의 방향이 필요할 뿐이다. 성폭력의 정도를 임의로 구분하고 그에 맞는 처벌방식을 도식적으로 끼워맞추는 것은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며, 그것은 성폭력의 본질을 은폐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¹⁴⁾.

16. 반성폭력은 성억압이 아닌 성해방을 함축한다

사람의 성적 욕구는 풍요로운 인간관계에의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욕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성은 철저히 억압되어 있다. 인간은 오직 단자화된 개인으로서만 존재한다. 인간은 무한경쟁 속에서 모든 인간관계를 박탈당했다. 이제 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박탈된 어떠한 것, 자신에게는 애초부터 결핍된 어떠한

오히려 부추김을 받는 반면, 피해자는 영원히 배제되는 기가 막힌 현실을 가능케 한다.

13)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고 해서 성적자율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남성이 성적분할을 바탕으로 여성을 더 정확히 말하면 육체로서의 여성을 지배한다는 것, 혹은 지배해야만 한다는 것은 남성 개개인의 '자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14) 97년에 나온 '서울대학교 여학생부의 성적 괴롭힘에 대한 정책안'을 보면 성폭력에 관한 관점 자체의 문제점은 지적하고라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거기에는 성폭력 문제 자체보다, 그것의 '공정한' 재판 과정, 처벌의 '객관성', 법적 형식이 훨씬 강조되어 있다.

것이 되어 버렸다. 성은 물화되었으며 독점되었으며 고립된 상품이 되어 버렸다¹⁵⁾. 성은 이제 오직 권력과 부를 소유한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되고 만 것이다. 모든 사람에 내재하고 있던 풍요로운 인간관계의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욕구로서의 성적 욕구는 이제 상품화된 성의 구매욕, 박탈된 성의 폭력적 전유욕으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상품화된 성의 구매 행위와 성적 욕구의 왜곡된 표출은 언제나 포르노와 성폭력으로 현상한다.

따라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반대할 것은 개인이 자신의 성을 드러내는 것, 성적 욕구의 자연스러운 표출 그 자체가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적자유권을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성의 발현을 통한 풍요로운 소통과 관계맺음을 진정으로 원한다. 우리가 반대해야 할 것은 성의 발현을 끊임없이 질곡하며 그것이 드러나는 즉시 그것을 성폭력과 포르노로 변질시키는 현 사회 구조일 뿐이다. 우리가 성의 상품화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의 철저한 억압은 가시적인 성폭력을 소멸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성폭력이 아닌 성 자체의 소멸로서 이는 직접적으로 모든 인간관계의 단절을 의미할 뿐이다¹⁶⁾.

17. 성폭력에 관한 담론은 여성의 언어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성폭력의 근절을 목표로 하는 모든 운동의 출발점은 이러한 성폭력에 대한 남성적 담론, 성폭력적 담론에 대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를 성폭력이라 규정하는 것에서부터 그것에 대해 평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까지, 성폭력을 둘러싼 모든 영역은 직접적으로 투쟁의 장이다. 이러한 투쟁은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러한 복합적이고 다부진 투쟁만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15) 자본주의 체제는 끊임없이 상품 아닌 상품들과 욕구 아닌 욕구들을 창출함으로써만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성은 이러한 상품 아닌 상품들, 욕구 아닌 욕구들의 대표적인 예이다. 어떠한 것이 상품으로 현상하기 위해서 이는 필연적으로 고립과 물화, 박탈과 독점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인간관계의 욕구로서의 성은 애초부터 상품화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상품화된 성은 이미 성이 아니다. 따라서 성의 상품화는 필연적으로 모순을 내포하며 성에 관한 왜곡된 이미지를 창출한다. 자본은 끊임없이 성에 관한 비정상적인 욕구를 규정하고 강요한다. 현실에서 성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구에게나 결합된 것, 나는 소유하고 있지 못한 어떠한 것으로 드러난다. 대신 상품화된 성만이 '이것이 성이다. 이것을 소비하라'고 강요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편적이고 본능적인 성-성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어떤 행위를 어떤 수 없는 성욕 때문이라는 말로 정당화하는 모든 담론은 이러한 이유로 부정되어야 한다. 한편, 상품화될 수 없는 것을 상품화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은 자본의 약한 고리로 현상할 가능성이 있다.

16) 이러한 맥락에서 '성적자유권 확보'라는 문제의식은 단순히 성적자유권을 생득적이고 고정적인 어떠한 것으로 가정 한 채 그것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그칠 수 없다. 성이 소멸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미 성이 상품화된 성으로서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이미 갖고 있는 성적자유권을 수호한다는 것은 저극히 수세적이고 미약한 것일 수밖에 없다. 성적자유권 확보의 과정은 말 그대로 투쟁과 쟁취의 과정이어야 한다. 스스로의 투쟁으로 쟁취하지 않은 어떠한 권리를 누군가에 의해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성폭력학칙제정운동, 그 깃발을 올리자!

우리는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그것의 여성운동의 측면, 대중운동의 측면, 자치운동의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의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라는 점이다. 즉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이 이러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성폭력학칙제정운동만이 이러한 가능성을 구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가능성이며 가능성은 언제나 운동의 과정 속에서 현실화되어야 할 것일 뿐이다.

21.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은 여성운동이다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은 여성운동이다'라는 명제가 단순한 단어반복이 아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 여성운동이며 지금까지의 학내 여성운동은 어떠한지를 돌이켜보고자 한다. 여성운동은 첫째, 여성을 정치화하는 운동이며 둘째, 여성적 목표를 위한 운동이며 셋째, 여성적 방식의 운동이다. 물론 이 세 가지 여성운동의 양태들을 모두 온전히 구현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동안의 여성운동의 성과들이 결코 간과될 수는 없다.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세 가지 양태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면 여성운동의 급진성은 적지 않게 퇴색할 것이라는 점이다.

87년 이후 학생회의 건설과 함께 등장했던 총여학생회는 현재 활동력을 많이 상실한 상태이며, 많은 대학에서는 이미 존재를 감추었다. 총여학생회의 해소의 원인 중 하나는 그것이 단지 여성을 운동을 위한 동원의 대상으로 사고한 운동이었다는 점이다. 여성들이 운동에 동원되는 과정에서 운동 패러다임의 남성성은 조금도 전하지 않았다. 그것은 여성을 정치화하는 운동이었지만, 그 속에서 여성은 남성으로서 정치화되었을 뿐 여성으로서 정치화할 수는 없었다. 학생운동의 역사 속에서도 여성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철저히 남성화되어야 했으며, 사적인 영역에서는 철저히 전통적 여성상을 구현해야 했다. 또한 학생회라는 조직형태는 지극히 관료적이고 남성적인 것으로서 여성운동을 담지할 조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후에 제기된 여러 활동에서는 여성적 목표가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여전히 중심운동에 종속되어 있어야만 했다. 여성운동은 그 자체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이전에 중심운동의 패러다임에 기반해서 자신의 존재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¹⁷⁾.

작년 서울대 약대 구교수 사건을 비롯한 교수의 학생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성폭력교수퇴진투쟁은 학생대중에게 커다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이러한 운동이 촉발된 것은 정확히 그것이 성폭력이기 때문이었으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학내 여성운동조직의 활발한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대중에게 받아들

17) 정신대 문제와 미군부대 기지촌 여성 문제, 그리고 여성노동자 문제를 둘러싼 활동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여진 것은 그것이 여성운동이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것에 동조한 대중은 그 사건이 남성적 관점에서도 명백한 성폭력이었다는 점에서 한 명의 악질적인 교수를 처단하고자 했을 뿐이다. 한 명의 악인과 그렇지 않은 대중과의 전선, 혹은 교수와 학생간의 전선만큼 여성적 관점에서의 성폭력과 반성폭력의 전선은 전면화되지 못했다¹⁸⁾. 학생대중은 여전히 성폭력과는 무관한 사람들로 남아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교수퇴진이라는 운동방식은 대중의 삶에 침투해야만 하는 여성적 방식의 운동에 미치지 못했다 할 것이다.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은 그 일차적인 주체와 조직이 결정적으로 여성에게 달려 있다. 또한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여성적 관점의 정의를 대중적으로 관철시키고 그것의 근절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정확히 여성운동의 목표와 일치한다. 그리고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 내부를 관통하는 성폭력과 반성폭력의 전선을 전면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여성적 운동방식을 채택한다. 이러한 점에서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은 여성운동의 발전적 전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2.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은 대중운동이다

대중운동이라는 말만큼 많이 오염된 말도 없을 것이다. 남성적 대중운동에 대한 여성운동의 비판을 다시 논하지 않더라도, 기존 대중운동의 폐해에 대한 비판은 이미 충분히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비판들의 초점은 주로 대중을 주체가 아닌 대상을 하는 대중운동, 관료적 수직적 동원라인으로 표상되는 대중운동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비판이 현실에서는 대중운동 자체를 폐기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여성운동의 경우, 기존 대중운동에 대한 반발은 여성운동을 특유의 씨름주의와 문화주의로 경도하게 했다¹⁹⁾. 씨름주의는 여성운동을 담론적이고 자족적인 수준에 머물게 했다. 문화주의는 기존의 집회를 퍼포먼스로 대체하고 문화상품에 대한 분석을 더했을 뿐, 여성과 대학생의 삶의 문화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것의 변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여성운동에 국한된 문제는 결코 아니다.

기존의 대중운동에 대한 문제제기는 원칙적으로 정당하다. 그러나 그것이 효과적

18) 94년 우조교-신교수 사건은 이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가졌다. 그 때의 논쟁 지점은 성폭력교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신교수가 성폭력교수인가 아니냐였다. 이 사건은 대중적으로 개인의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행위 하나 하나에 대해서 그것이 성폭력인가 아니냐라는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구교수 사건과 구분되는 중요성을 가진다.

19) 대다수의 여성운동조직은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 비율과 남성적 조직에 대한 반발에서 기인한 독특한 구성원리를 갖고 있다. 대표의 권위는 강하지 않으며, 조직 분화도 뚜렷하지 않다. 구성원들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평등성이 강조되며, 조직에 앞서 개인의 삶을 우선적으로 보장한다. 자신의 공간을 가질 수 없었던 여성들에게 이러한 모임은 그 자체로서 커다란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여성운동조직의 특성은 기존의 조직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모임에는 성폭력문제를 대중적으로 해결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모임-씨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혹은 모임-씨름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과 씨름주의는 다르다. 같은 맥락에서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 혹은 문화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과 문화주의 역시 다르다.

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정당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중운동을 과감하고 복합적으로 실천하는 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것은 결코 대중운동 자체의 폐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사실상 모든 운동은, 사회적 과정에서 배제되어 침묵하고 개별화되어 무기력한 대중의 집단적 정치화를 직접적인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정확히 대중운동일 수밖에 없다.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은 그 성격상 여성운동이 더 이상 씨름주의와 문화주의에 갇혀 있지 말 것을 요구한다.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은 명백히 소수의 사람들의 입법투쟁이 아닌 대중의 집단적 정치화를 요구하는 지속적인 대중운동으로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여성운동이 지니고 있는 남성적 대중운동에 대한 비판력과 여성적 방식의 운동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을 통해서 현실화된다면, 이는 대중운동이 소멸한 시대에 새로운 대중운동의 중요한 전형이 될 것이다.

23.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은 자치운동이다²⁰⁾

지금까지 자치운동은 언제나 구호로서만 혹은 억압에 대한 즉자적인 저항으로서만 존재해 왔다. 어느새 자치는 선거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주요한 레테르가 되었다. 그러나 과연 학생자치권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는 서술되어지지 않았다. 자치는 본부와 교수, 공권력에 의한 탄압이 현실화되었을 때만, 이전의 '학원 자주'의 대응으로써 등장했을 뿐이다. 학생은 자신의 자치권을 언제나 침탈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었다. 자치는 동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부드러운 단어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의 본래적 의미로서의 자치'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형해화되어 왔다²¹⁾.

자치를 위한 저항 그 자체, 저항으로서의 자치운동은 진정 단 한 순간도 포기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것이 없이는 자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학생운동이 보여준 저항으로서의 자치운동이 즉자적이고 수세적이었던 데 있다. 즉자적이고 수세적인 자치권 수호의 한계는 명확하다. 열린 공동체 내부의 자치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구성원리, 구성으로서의 자치운동이 부재한 상황에서 즉자적이고 수세적인 자치운동은 공허해지고 만다. 우리는 수호해야 할 자치권이 무엇인지 모르며, 왜 그렇게도 자치권이 소중한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자치권은 수호될지언정 구성되거나 주장되지는 못했다. 외부의 과시즘을 상대로 한 우리의 투쟁은 항상 우리 내부의 과시즘으로 인해 저지되고 약화되었다. 사실 외부의 과시즘과 내부의 과시즘은 정확히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외부의 과시즘에 대한

20) 여기서는 논의 전개를 위해서 임의로 '저항으로서의 자치운동'과 '구성으로서의 자치운동'을 구분하고자 한다. 사실 이 둘은 정확히 같은 활동의 두 가지 측면으로서 드러나야 한다. 이 둘이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1) 자치가 '학생'이라는 범주에 관함으로써 그 급진성이 퇴색되어 버린 현실에 대해서는 『Critic』 4호의 『학생운동, '학생'에 관한 운동에서 자체의 서술하였다. 사실상 선거에서 '학생자치'라는 이름 아래 제시되는 공약들은 그것을 '학생 복지'라는 이름으로 대체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이다.

저항으로서의 자치운동은 반드시, 반드시 내부의 파시즘을 소멸하고 다른 질서의 구성으로서의 자치운동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이 둘은 정확히 같은 활동 속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둘이 분리되는 순간 어느 한 쪽도 힘을 가질 수 없다²²⁾.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은 대중적 논의에 기반한 공동체 내의 자치규약의 제정과 공동체문화의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구성으로서의 자치운동이 현실화되는 첫 번째 실험이 될 것이다.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은 대중이 직접적으로 사회적 권력을 전유하는 가운데, 모든 폭력과 파시즘을 소멸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공동체의 성원들이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자신들이 구성해내며, 자신들의 능력을 확인하고 신장시키는 과정 속에서만 온전히 진행될 수 있다.

3.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성폭력학칙제정운동에서 '학칙'은 두 가지 측면을 포괄한다. 하나는 교수사회와 대학본부를 포괄한 법률에 준하는 학칙이며 다른 하나는 학생 공동체 내에서의 자치규약이다. 학칙제정투쟁과 자치규약제정운동, 이 둘은 어느 하나로 환원될 수 없는 독자적인 의의를 갖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운동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²³⁾.

31. 학칙제정투쟁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학칙제정투쟁은 사실상 교수,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투쟁의 과정이다²⁴⁾. 그들은 학생 공동체에 대해 외부인이며, 학생에 대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강의실과 대학원실에서 그들의 폭력이 가능한 것은 이러한 그들의 위치와

22) 대학사회의 대의제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본래적 의미로서의 자치'와는 거리가 멀다. 80년대 당시, 대의제민주주의의 현실화로서의 학생의 건설 투쟁은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역사적 의미가 대의제민주주의 자체에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의제 학생회 건설 투쟁은 다음과 같은 맥락 속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첫째, 당시에는 사회가 형식적으로도 대의제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사회는 상대적인 진보성을 가질 수 있었다. 둘째 그것은 대의제민주주의라는 구성원리를 현실화시키는 운동과정이었기 때문에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87년 운동의 성과로 형식적이나마 정치영역에서는 대의제민주주의가 현실화되었고, 김영삼의 문민정부를 거쳐 이제는 김대중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학원 민주주의의 상대적 진보성은 완전히 박탈되었다. 오히려 갈수록 변질되는 선거의 모습과 올해 들어 급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는 본부에 의한 총학생회 불임정은 대학 내 민주주의가 사회의 그것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학생회의 건설이 완성되고 그것이 더 이상 운동하기를 멈춘 90년대에 학생회의 대의제민주주의는 이제 그 자체가 변형되어야 할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학생회 위원회, 단학대회, 전학대회에서의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인 논의구조는 대의제민주주의의 허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대의제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의 본래적 의미로서의 자치, 대안적 사회의 구성원리로서의 자치를 현실화시키는 항구적인 운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23) 많은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의 주체들은 이 둘을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둘은 하나의 활동에 동시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부분 이 둘은 충돌할 여지가 있으며 대중들 역시 혼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24) 물론 학생사회 내부의 성폭력에 대해서도 성폭력의 해결에 관한 원칙들을 정립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법률적인 의미로서의 학칙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그들이 폭력을 행사하고도 또다시 권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미 대화의 상대가 아니다. 오직 비타협적인 투쟁만이 그들의 폭력을 소멸시키고 학칙을 제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²⁵⁾. 이러한 학칙제정투쟁은 직접적으로 권위사회로서의 교수사회와 대학본부에 대한 공세적 운동이다. 이 점에서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은 여타의 자치운동과 교육운동, 대학원자치회와 연대할 수 있으며 또한 그래야만 한다.

현재까지의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은 주로 위와 같은 학칙으로서 제기되고 진행되었다. 이것의 중요성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학칙의 제정은 그 실질적 활용 가능성과 상징적 의미에서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여성운동의 일대 성과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법은 현실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사회변동을 불러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오랜 관행이 법으로 정착하기보다는 법을 만들으로써 관행을 바꾸는 경향이 큰 사회에서는 법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의 과제를 이것만으로 설정하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라는 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는 앞서 말한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의 급진적 가능성을 상당 부분 삭감시킬 것이다.

첫째, 학칙제정투쟁은 냉정하게 말해 대중의 대규모적인 동원이 가능하지 않다면 실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이것은 장기간의 준비 기간을 필요로 하며 짧은 시간 폭발적인 동력을 이끌어내어야만 한다. 이는 학칙 제정이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종속되는 운동과정을 낳을 수 있다. 학칙제정투쟁 과정에서도 자치규약제정운동은 진행되어야 하며 운동의 과정 자체가 성과를 남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

둘째, 학칙제정투쟁은 불충분한 여성운동이다. 기존의 성폭력 담론을 해체하고 여성의 언어로 이를 재구성하는 것은 공동체 내의 구체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권력관계가 흐르고 있는 개개인의 내부에서의 투쟁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학생사회를 여전히 공백으로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학칙제정투쟁은 성폭력 담론의 지형 자체를 변혁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셋째, 학칙제정투쟁만을 강조하는 것의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이것에 가려 자치규약제정운동이 지체되거나 해소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십 년여의 학내 여성운동의 역사 속에서 여성운동은 항상 다른 운동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계속해서 지연되어 왔다²⁶⁾. 자치규약제정운동이 함께 진행되지 않는다면 학칙제정의

25) 실제적인 학칙의 제정 과정에서 대학본부와의 협상은 개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과정을 통해서 교수교직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는 법률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또다시 지난한 투쟁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학칙제정투쟁이 단순한 입법활동이 아닌 '투쟁'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학칙 항목에 교수처벌 조항을 삽입하는 것보다는 투쟁을 통해 선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여러 대학에서 진행중인 교수퇴진투쟁은 이러한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이다.

26) 여성운동이 항상 다른 운동과 함께 해 왔다는 것은 여성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양태는 여성운동이 다른 운동들과 연대의 수준에서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여성운동이 포섭되어 소멸한 것이었다. 여성운동이 자신의 전선을 잃어버리고 단지 동원된 결과만을 낳은 사례는 흔

의미는 반감될 것이 분명하다.

넷째, 법률이 가지는 고유한 성격으로 인해서 왜곡될 소지가 있다. 학칙제정투쟁은 명백히 반성폭력 운동이지만 입법투쟁이기도 하다. 따라서 법률의 논리가 필연적으로 결합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경우에 따라 운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²⁷⁾.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학칙은 성폭력 사건에 관한 여성적인 관점과 기본적인 원칙들, 그리고 운동의 방향을 담은 상위법의 개념이지 필요이상으로 복잡한 법적 형식이 아니다²⁸⁾. 따라서 법률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자치규약제정운동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32. 자치규약제정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학칙제정투쟁이 권위사회에 대한 투쟁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면, 자치규약제정운동은 학생 공동체 내부의 자치절서의 구성을 위한 운동의 과정 자체이다. 전자가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목표를 향해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요구하는 운동이라면, 후자는 공동체의 전화와 재구성을 위한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이다. 전자가 성폭력에 관한 여성적 담론을 보편적 가치로 세력화하고자 하는 입법투쟁이라면, 후자는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하고 그것의 가능성을 증명하며 우리 삶의 전변을 바꾸어 나가는 운동이다. 이 두 가지 운동의 경중과 차이의 문제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 둘은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과정에서 서로의 공백을 메우고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분히 많다. 이러한 역사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물론 모든 운동을 동시에 전면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이들을 배치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특정운동의 단결과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학생운동이 어떤 뚜렷한 정서적 운동을 벌여 내지도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성운동을 또다시 지연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사실 현재의 상황에서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은 가장 정당하고 적실한 운동일 수 있다.

27) 법률이 갖는 한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법률의 제정은 일정 정도의 타협을 전제로 하며, 한 번 제정이 되면 이후에 문제점이 발견되어도 수정되기 어렵다. 이는 대중적 논의가 충실히 학칙에 포괄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법률은 구체적인 사건에 직면해서는 항상 그 해석상의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필요 이상으로 복잡한 법적 절차를 요구한다. 이는 사건의 신고율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셋째, 법률은 기본적으로 신고되는 사건만을 처리한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많은 피해자가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법률은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 더군다나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성폭력에 대한 것들이 일일이 기소되어 처리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넷째, 법률은 권위를 위임받은 특정인, 특정기관만이 사건의 모든 판단과 해결의 권리를 독점한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대중적 논의 대중적 판단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대중이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 능력을 갖고 있음을 정당하게 주장하는 자치운동의 원리와 충돌한다. 다섯째, 법률은 인지에 대한 차별만을 할 수 있다. 법률은 사회적 범죄와 그것의 담지자로서의 가해자를 구분하지 못한다. 이는 특히 반성폭력 운동에 있어서는 큰 결함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반성폭력이라는 가치를 전면에 내걸고, 성폭력에 관한 여

성적 담론을 세력화하며, 성폭력 해결의 중요한 원칙들을 공식적으로 입법화하는 것은 결정적인 가치를 갖는다.

28) 헌법은 그 내용 자체로는 혁명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현실에서 해석상의 차이를 가지며 이를 세부적인 법률로 서술하는 과정에서 법률의 논리와 현실의 권력관계가 관철된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헌법적인 의미에서의 성폭력에 관한 중요한 원칙들을 수립하고 이를 세력화하는 것이지, 세부적인 법률을 '법적절차'에 맞추어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자치규약제정운동은 직접적으로 여성적 방식의 운동을 요구한다.

첫째, 우리는 개인들과 공동체들의 내부에서의 투쟁을 유도해야만 한다. 우리는 개인과 개인간의 갈등, 공동체와 공동체간의 갈등으로 현상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그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각각의 공동체와 개인에 공통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전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고 있음을 폭로해야 한다. 그리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끊임없는 평가와 반성을 촉구하여 스스로 변화해 나아가도록 자극하는 운동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이는 개인과 공동체를 일과압적이고 통일된 주체로 파악하는 방식의 운동과는 거리를 갖는다. 이를 위해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공론화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직접적으로 대중에 대한 공격을 수반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지속적이고 소규모적인 대중적 논의의 장을 펼쳐야 한다. 자치규약은 법률과 달리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비한 강제력은 미약할 수밖에 없다. 자치규약이 담보할 수 있는 강제력은 오직 그것의 제정 과정에서 대중의 동의수준과 위반한 사람의 자율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칙은 그것의 제정만으로도 큰 의의를 가질 수 있지만, 자치규약은 명확히 그것의 제정 자체보다 제정을 위한 과정과 제정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극단적으로 자치규약이 명문화되지 않더라도 대중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셋째, 우리는 대중들의 자발적 문제해결능력을 고양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진행시켜야 한다. 법률적인 문제해결은 문제해결의 권한을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오직 공인된 특정기관에만 집중시킨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정은 항상 구체적인 개인과 개인,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의 상호주관적인 합의를 쌓아 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문제는 현실에서 그러한 상호주관적인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그럴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현실이 가장 일차적인 극복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법률에 의거한 '객관적'인 자동적인 문제해결 방식은 대중을 여전히 수동적인 위치로 고정시킬 위험이 있다. 대중들이 자신들의 사고와 행위의 주체로 당당히 등장하지 않는 이상, 일상적인 성폭력 모두를 근절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폭력학칙제정운동이 대중의 정치화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대중운동, 자치운동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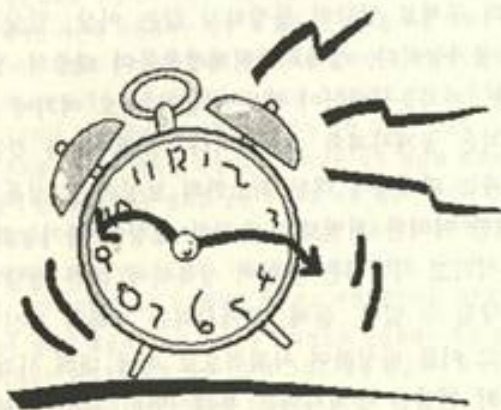
넷째, 문제해결의 원칙은 공개사과와 재교육이다. 공개사과가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개사과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다.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로도 온전한 보상은 불가능하다. 오직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사과하는 것만이 성폭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해서 피해자의 복권을 앞당길 수 있다. 둘째, 공개사과는 가해자 자신이 스스로의 행동의 잘못된 점을 깨닫고 이를 반성하며 사회적으로 이에 대해 사죄할 수 있는 유일한 과정이다. 가해자의 진실한 공개사과를 통해서만이 사회적 성폭력과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실현했던 가해자는 분리될 수 있으며 이로써 사회적 성폭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시작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개사과는 법률적 의미에서의 '처벌'과 다르다. 처벌은 사회적 성폭력에 대한 반대로 이어지지 못한 채 가해자만을 영원한 범죄자로 낙인찍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처벌은 정확히 말하면 가해자인격에 대한 처벌이 아닌 사회적 범죄에 대한 처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고립시키고 배제시켜야 할 것은 인간이 아닌 사회적 범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교육은 가해자의 변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여러 가지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하다.

다섯째, 우리는 대안적 소통구조와 문화를 창출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가시적인 성폭력의 소멸 자체가 자동적으로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문화, 현재의 공동체를 해체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대안적 문화, 대안적 공동체의 건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동체의 해체의 과정과 공동체의 건설의 과정은 정확히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실로 항구적인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대안적 공동체라는 고정된 상이 있고, 그것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기 때문은 아니다. 그것은 대안적 공동체라는 고정된 상이 실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변형해 나아갈 수 있는 열린 공동체, 대중의 집단적 정치화를 통해 대중 스스로가 공동체 전화의 과정을 전유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 공동체만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대안적인 소통구조를 정착시키고 풍요로운 문화를 건설하는 부단한 노력의 과정 속에서만이 가능하다.

4. OUTRO - 기다릴 것인가, 바로 시작할 것인가

본질적으로 지속적인 운동을 급박한 정세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부차적인 것으로, 차후적인 것으로 왜소화시킨 학생운동의 역사는 지금까지만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이러한 오류를 반복하지 말자. 지금 바로 여기서 시작하자, 성폭력학칙제정운동, 그 당당하고 자랑스런 것들을 울리자!



성희롱(sexual harrassment)에 대하여

1. 우리에게 '성희롱'이란 말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희롱(sexual harrassment)이란 우리 사회에서 낯선 말이었다. 성희롱 개념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1993년 신교수-우조교 사건이 터져나오면서부터였다. 그간 일터에서, 학교에서, 뒷풀이 장소에서,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든 남성들의 예기치 않은 성적 행동에 노출되어 있던 한국의 여성들에게 '성희롱'의 개념은 너무나도 쉽게 이해되었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여성들은 원하지 않은 성적 접근이 명백히 불려일으키는, 그러나 표현될 수 없었고 안으로만 삭여져야 했던 그 모든 불쾌한 느낌들이 이제 이름을 얻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 성희롱이라는 이름이 자신들에게 그런 접근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성희롱 개념은 제대로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술자리의 좋은 안주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것이 그간 얼마나 심대하게 여성들의 권리를 훼손해 왔으며, 또 습관적으로 성희롱을 일삼는 남성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같은 문제들은 전혀 토론되지 않은채, 그저 여성들이 '참아주어야' '정당한' 행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소모적인 말다툼만이 진행되었다. 성희롱적 상황에 항의하는 여성에게는 '과민반응', '인화(人和)를 해치는 트러블메이커', 심지어는 '고루한 순결·정조 이데올로기의 대변자'라는 딱지가 붙여졌으며, 이를 해결할 어떤 뚜렷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문제를 제기한 여성에게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고 마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지금도 여전히 성희롱적 상황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웃음면 얼굴로 피해버리고 대범한 척 하는 것, 술자리에 가지 않는 것, 후배나 다른 여성동료들에게 '그 사람을 조심해라'고 암암리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뿐이다. 성희롱적 상황을 참거나, 아니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속한 집단의 다른 성원들로부터 기꺼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우선 성희롱 개념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그것이 단지 성적인 스캔들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마음놓고 공부하고 일할 권리를 박탈하는 심각한 성차별적 행위임을 밝히고자 한다.

2. 성희롱의 개념요소

성희롱에 대한 정의는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외국의 판례와 법령,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성희롱은 다음과 같은 개념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unwanted) 행위

성희롱의 피해자는 많은 경우 여성이지만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성별이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²⁹⁾ 성희롱이 흔히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며,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자체를 반영하고 또 그러한 사회에 기대어 방치되거나 묵인되거나 조장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그것은 여성일반에 대한 성차별(sex discrimination)이며 여성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³⁰⁾ 성이든 지위든 명예든 상대적으로 많은 권력을 가진 자라면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정한 성적 접근이 가능하므로 여성만이 피해자가 된다고 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³¹⁾

성희롱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행위이다. 이 때에 '원한다'는 것은 그 의사가 진정한 것임을 요한다. 따라서 분위기상 또는 고용관계에 불안한 요소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묵인하는 것은 '원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심지어 당해 피해자가 평소에 성적 유행어와 속어를 태연히 사용하거나 그런 자리에 끼어드는 등 그러한 행위를 즐기는 것으로 비쳐졌거나 혹은 그가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당해 행위가 피해자가 원한 것이 아닌 이상 성희롱이 성립한다.

또한 원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실제에 있어 그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당시 보인 피해자의 태도가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게 된다. 미국에서는 명시적으로 거부나 불쾌를 표시했을 경우는 물론, 암묵적 거부도 원하지 않은 것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주의할 것은 피해자 유발론이 성희롱에 대한 항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야하게 보이는 옷을 입었거나 매혹적으로 보이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어귀를 만지작거렸든지 추파를 던지며 성적 농담을 했다고 변명할 수는 없다.

(나) 성적인 행위 또는 성에 근거한 행위

29) 최근의 미국대법원판결(*Oncale v. Sundowner Offshore Services*, 1998)에서도 남성간의 원하지 않은 성적 접근이 성희롱으로 문제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30) 자세한 것은 Anita M. Superson, "A Feminist Definition of Sexual Harassment", in *Sex, Morality, and the Law* edited by Lori Gruen and George E. Panichas, Routledge, 1997, pp.354-367을 참조.

31) Susan M. Dodds et al. ("Sexual Harassment", in Gruen and Panichas(1997), pp.380-390)은 성희롱은 성차별적 권력을 포함한 권력의 오용이라고 평가하면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의 경우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여성단체들도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성희롱은 성적인 의미를 지니는 행위이다.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든, 다른 어떤 성적인 목적의 획득을 위한 것이든, 단순히 농담으로 그런 것이든 간에 그 목적성은 요구되지 않으며 성적인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면 행위양태를 불문한다. 물리적으로 신체나 옷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도 있고 은근히 아래위로 쳐다보는 등 간접적으로 접촉할 수도 있다. 성적인 권유와 언사로서도 성희롱은 성립한다. 자신이 직접 행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포르노그램을 걸어두는 것으로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성적 의미가 깃들이지 않은 일반적인 폭력이나 명예훼손, 또는 모욕은 성희롱이 아니다. 다만 행위 자체에는 성적 의미가 없더라도 성에 근거해서 학대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우리 대법원 판결은 '분명히 성적 동기나 의도를 지닌 것만을 성희롱으로 보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는 성적인 행위는 물론 상대의 성에 근거하여 여성이라고 비하하거나 공격하는 행위 및 모멸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까지 성희롱에 포함시키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³²⁾와 비교된다.

(다) 업무와의 직·간접적 관련

성희롱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성적 접근이지만 법률적으로도 그것을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은 통상 그 접근이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행해지거나 업무와 관련된 사람에 의해 행해질 때이다. 성희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자신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방해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지닌 권력으로 인해 업무의 존속 자체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성희롱은 고용불평등(employment inequality)의 중요한 표지로 이해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처도 노동관련법에서 마련하고 있다.³³⁾ 법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형사적인 문제로 성희롱을 다루는 것보다는 근로환경의 문제로 이를 다루는 것이 효과

32) 가령 유럽연합은 원하지 않은 성적 행위뿐 아니라 성차별에 기초한 행위까지 성희롱으로 보고 있다(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0). 장희숙, "성폭력의 실태", 『인간발달연구』3권 1호, 1996, 124면 참조.

33) 간략히 해당법의 이름만 개관해 봐도 미국의 고용기회평등법(시민권법 제7편, 1964년 제정, 1991년 최종개정)과 그 이행을 관장하기 위한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의 관련지침, 캐나다의 인권법(1977년 제정, 1985년 개정)과 노동법전(1988년 개정), 독일의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근로자보호법(1994년 제정), 프랑스의 노동법전(1992년)과 형법(1992년 제정, 1994년 시행), 스웨덴의 남녀고용평등법(1991년 시행, 1994년 최종개정)과 형법(1992년 제정), 스페인의 근로자협약(1980년 제정)과 공무원규칙(1980년 제정), 벨기에의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근로자보호법(1994년 제정), 오스트레일리아의 성차별금지법(1984년 제정, 1992년 개정), 뉴질랜드의 인권법(1993년 제정, 1994년 시행)과 고용계약법(1991년 제정) 등이 성희롱을 규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아직 법규는 없지만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고 대만의 경우는 지금까지 형법 및 사회질서유지법내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성희롱을 규제해 왔으나 조만간 여성근로자의 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대만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금지조항을 포함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한국여성개발원,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 대책방안 연구』, 제2장을 참조. 미국과 일본의 관련판례의 간략한 소개는 조엘 프리드만 외 3명, 우영은 역, 『이것이 성희롱이다』, 여성사, 1994의 부록 참조. 교육기관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정리한 글로는 김혜란·이상근·이복은의 "대학에서 성적 괴롭힘의 정의 및 예방",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 연구", 1996.12. 92-113쪽이 있다.

성폭력학제적정공정회

적이며 타당하다. 누구든 평등하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할 책임을 고용주에게 부여함으로써 성희롱에 대한 방지와 대책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의할 것은 이때의 업무란 고용관계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학업이나 연수, 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개인적 업무도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대법원도 조교성희롱사건의 판결에서 성희롱은 '고용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업무관련성을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³⁴⁾ 따라서 성희롱이 문제될 수 있는 장소에는 회사, 학교 등 일하고 있는 일터뿐만 아니라 가령 회식장소나 회사 야유회, 출장지, 통근버스 등 일과 관련되는 다른 장소도 포함된다. 즉 그같은 공간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원하지 않은 성적 접근은 성희롱이 될 수 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업무공간에 속해있지 않은 제3자일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은 피해자의 고용주에게 묻지 못할 것이다(따라서 이 경우는 형사상 내지 민사적으로만 문제될 뿐 노동법적 문제는 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제3자가 비록 당해 회사의 소속원은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 지속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면 그에 대한 방지의무는 여전히 고용주가 진다고 봐야 한다.

또한 동료든 상사든 간에 업무로 인해 알고 있는 사람간에서 원하지 않은 성적 접근이 행해진다면 비록 일터와 관련된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더라도 성희롱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직장밖에서 행해지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방해가 됨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직장동료나 상·하급자가 전화를 걸어 괴롭힌다든지 다른 장소에서 성적 접근을 한다든지 하는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도 널리 고용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희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라) 손해 내지 침해의 발생

그러나 일터 등에서의 원하지 않은 성적 접근이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문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성희롱으로 규정하여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려면 그로 인해 어떤 손해를 입었어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어야 성희롱으로 인정되는가, 손해가 보복형 성희롱에 의한 해고나 강등, 임금삭감 등일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과 그것이 성희롱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음을 입증하기가 비교적 쉽다. 그에 비해 소위 말하는 환경형의 성희롱인 경우는 손해의 판단이 간단하지 않은데, 앞서 미국의 예에서 본 것처럼 학대적이고 적대적인 환경이 형성되었음이 인정되면 족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해야 한다. 보통의 경우 어느 정도 지속적이거나 반복되는 행위로 인한 손해이겠지만, 그 자체 농후하게 인격권을 침해했다면 단 한 번의 원하지 않은 권력적 성적 행위라도 성희롱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C 역시 단 한 번의 언동으로도 그것이 중대한 것이

34) 그리고 '업무'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는 법학의 일반적인 해석방법이기도 하다.

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3. 우리 사회에서의 성희롱

우리사회에는 현재 성희롱을 다루는 법조항이 전혀 없다.³⁵⁾ 그래서 세간의 관심을 크게 끈 사건들도 결국은 고작해야 민법상 피해보상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심지어 성희롱의 혐위가 아주 농후한 교수를 구속하면서도 '성희롱'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무고죄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동원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1996년 각 정당에서는 이 문제를 입법화하기로 하고 각기 이를 포함한 성폭력특별법(신한국당), 남녀고용평등법(국민회의)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지만 실제 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³⁶⁾ 그러나 매스미디어 등에서는 마치 우리사회에서도 성희롱의 문제제기가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도내용 역시 '전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될 문제였던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남성중심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희롱의 문제제기가 남성의 입장에서 과표상되고 회화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쓰비시 사건으로 촉발된 성희롱에 대한 미국사회에서의 관심과 실태를 보도하면서 "'예쁘다' 말 한 마디로 범죄자 될 수도..."라는 표제를 붙인 일간지 기사는 대표적인 사례다(96.10.15. 문화일보).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히 '당시의 상황과 당사자가 받아들이기에 따라'³⁷⁾

35) 형법 303조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유일한 조항인데 이것은 간음, 즉 성기삽입의 경우에만 해당되고 강제추행조차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성희롱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36) 성희롱을 성폭력특별법에 규정하는 것은 이것이 고용 또는 취업권에 관계된 문제라는 점을 흐리게 하고 엉뚱한 성범죄라는 식으로 오도될 우려가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또는 노동법에 명시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하는 효과는 있으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될 수 있고 교육상 성희롱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어떠한 규정을 어느 법률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넓은 여론수렴 및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37) 워싱턴포스트 1993년 8월호에 실린 독자 상담은 실제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되고 있는지 잘 보여 준다. 여기서는 '배려와 윤리'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김학준·강기원, 1996, pp.92-93에서 재인용).

Q) 직장에서 남자직원이 동료 여자직원의 외모나 옷에 대해 칭찬할 때도 그 남자직원은 이것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야 하나요?

(A) 물론입니다. 직장에 나와있는 여성은 일하면서 나와있으며, 자신을 전문적인 또는 직업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의 성과 관련하여 자신이 다른 동료들과 똑같이 대우받기를 기대합니다. 상대방이 여성임을 인식해 남성에게만 미치지 않는 찬사를 베푸는 것을 그 여성이 성차별로 인식하고 괴롭혀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연회장이 하든가 사교장 같은 곳에서라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요.

Q) 그렇다면 직장에서는 남자 직원이 동료 여자 직원에게 "멋있다"는 칭찬의 말을 아예 못하고 지나야 한단 말입니까?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 남자직원이 상대방 여자직원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믿는다. 상대방 여자직원이 그 남자직원에게 그렇게 말해도 좋다는 여력을 명시적이면 묵시적이든 주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그 남자직원은 "나 자신을 상대방이 환영할 것인가 환영하지 않을 것인가"를 먼저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남자직원이 동료 여자직원을 상대로 유혹요구를 한다든가 하고 싶다고 집신다. 그럴 때 그 남자직원은 그 유혹요구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먼저 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듣고 나서 괜찮다고 하시면 그때 가서 그 동료 여자직원에게 하십시오.

라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는 전혀 부각되지 않은 채 특정한 어떤 행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희롱이 된다는 것이 되어 결국 '어디까지가 성희롱이냐'라는 식으로 문제가 변질된다. 이런 문제를 속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속에서 여성이 입는 피해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는 것의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같은 기사는 성희롱이 고용상의 성차별에 대응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시민권법 제 7조가 규정한 직장내 성희롱의 전형...' 하는 식으로 성희롱 자체가 하나의 성범죄로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잘못 기술되어 있는데, 이같은 오보는 성희롱을 고용 및 교육과 같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평등권의 문제로 위치 지우지 않고 상대적으로 논쟁적인 성 문제로만 규정함으로써 논쟁의 지평을 스킨들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같은 제도적 미비와 문제의식의 오도는 현재 진행되는 성희롱 논의가 실제로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또다른 성희롱으로 작용하게끔 하고 있다. 가령 성희롱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여자 조교는 쓰지 말자든가, 아예 여학생들은 뒷풀이 자리에 나오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그 예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를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전형적인 성희롱의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성희롱 예방책'으로 심각하게 떠들어대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사회에서는 성희롱인 것이 성희롱 아닌 것으로, 성희롱 아닌 것이 성희롱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예를 들어 남녀 학우가 술자리에서 서로 즐겁게 술 마시다가 '한잔 따라봐' 하는 것은 성희롱이라고 보기 어렵다. 같이 공부하는 동료로서 학우에게 술 한잔따라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술은 뭐니뭐니해도 여자가 따라야 재밌어야' 라는 식으로 성별을 강조하면서 추근거리고 그것이 여학우에게 불쾌감을 유발한다면 그 여학우는 자신의 불쾌감을 말하고 그런 행동을 그만둬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그런 의사 표시가 있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강요하거나 습관적으로 그런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때 그 행동은 성희롱이 된다. 다른 예로,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남자 선배가 그 중 한 여학생을 '찍어두고', '재는 내꺼니까 아무도 건드리지마' 하는 식으로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면 이것은 정도가 심각한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여학생의 학내에서의 인간관계 형성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동료 남학생과의 학우관계조차 '잠재적 성관계'로 낙인찍음으로써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누구랑 자랐다', '개는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식의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행동은 성관계에 대한 도덕적 규제가 엄격하고 순결·정조 이데올로기가 아직도 엄존하는 한국사회에서 여학우의 학교 생활을 치명적으로 손상하는 결과를 빚게 되므로 아주 심각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결국 우리는 성희롱 개념은 단지 '성적인' 의미만 있는 행동이 아니라 타인의

'성'을 빌미로 삼아 그 사람의 사회생활, 특히 노동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적 행위임을 올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학 내에서 남성들은 혹 자신의 행위가 우월한 지위(교수 또는 선배라는 공적 지위 뿐 아니라 가부장제 하에서 남성이라는 성 자체가 부여하는 우월한 지위를 포함하여)를 남용하여 타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들은 자신들도 평등한 교육과 노동의 권리를 갖고 있음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것이 침해된다고 판단될 때는 당당하고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측에서도 시급히 이 문제를 규제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같이 대학이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미 대학내 성비가 일반 사회의 성비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에서, 게다가 막 성인의 문턱을 넘어서는 남녀가 함께 공부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대학은 (강간이나 성추행 등 심각한 성범죄를 포함하여) 성희롱적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 중의 하나이다. 현재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여성이 개인적 피해를 감수하거나, 몇몇 여학우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은 제대로 안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³⁸⁾ 결국 성희롱 사건이 하나 발생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책임과 부담을 여학우들이 모두 짊어지게 되는 셈인데 이것 역시 가히 성희롱적 상황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대학당국이 이런 문제를 시급히 인정하고, 객관적인 내규와 상담센터 등을 학내에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글은 백은경님(서울대 강사)의 'sexual harassment' 란 무엇인가? 라는 글과 여성과 사회(창작과 비평사) 9호에 들어갈 오정진님이 쓰신 '성희롱의 법적인미'를 일부 발췌한 글입니다. 참고로 '여성과 사회' 9호는 6월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38) 예를 들어 추행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여학생회 등에서 거의 일상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문제제기를 해서 가해자에게 잘못을 인정시켜놓으면, 가해 남학생은 학교를 휴학하고 군대를 갔다가 복학해서 멀쩡히 학교를 다니는 반면 피해 여학생은 '그런 일을 당한 여자'라는 소문에 시달리다 못해 학교를 그만두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이런 경우 남학생이 복학 후에 자기의 '무용담'을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 알립니다 >

여성 연대회의 공청회

대학 내에서의 성폭력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며, 특정한 사람들의 문제도 아니다. 바로 언제나 있어왔던 우리 자신들의 문제이며, 모든 대학사회의 문제이다. 성폭력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은 우리학교 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에서 공유되어, 공동으로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97년 초에 만들어진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에서는 최근 학내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성폭력 학칙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학칙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내고,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의 방향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이번 여성연대회의에서는 18개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한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치루어질 이 행사에서는 학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우리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학칙을 소개하고 같이 토론했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것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시: 1998년 5월 14일 늦은 5시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중강당

주최: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주관: 여성연대회의

(고려대 여학생위원회, 국민대 총여학생회, 동국대 총여학생회(준), 동덕여대 여성행동위원회, 서강대 성정치위원회, 서울대 관악여성모임연대, 서울시립대 총여학생회, 성균관대 총여학생회, 수원대 총여학생회, 아주대 총여학생회, 연세대 총여학생회, 영남대 총여학생회, 외국어대 왕산 총여학생회,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한양대 여성위원회, 홍익대 총여학생회)